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국립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	<p>무기계약직 채용 서류전형 채점위원 이해관계자 미신고</p> <p>○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9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한경대학교 계약직원 규정」 제2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계약직원이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말하며 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별도의 전형절차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한경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르면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채용시험위원 서약서」에 응시자와의 친인척, 직장에서의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위원의 회피를 신청하겠다고 확인 후 서명하여 제출하였는에도,</p> <p>- 한경대학교 △△과장 ○○○(겸임: □□□, ◇◇◇)은 무기계약직 연구원으로 지원한 겸임부서원 ▽▽▽이 2000. 0. 0.부터 2000. 0. 0.까지 □□□ 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서류전형 평가일(20. 0. 0.)에 회피하지 아니하고 서류전형 채점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겸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 지원자 5명에 대하여 서류전형 평가일(20. 0. 0.)에 회피하지 아니하고 채점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음</p>	<p>○ 신분상 처분</p> <p>- <경고> 1명</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국립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	<p>교직원 4대 폭력 예방 교육 미이수 등</p> <p>○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대학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이하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교직원 4대 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경대학교 교직원 89명은 2000년도에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등 위 교직원 00명이 200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복지대학교 교직원 00명은 2000년도에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등 교직원 00명이 2000년도부터 2000년도 까지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p>【신규 임용 교직원 4대 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경대학교 200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위 신규 임용 교직원 00명은 임용일로부터 미이수 및 00개월을 초과하여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있음. 	<p>○ 행정상처분</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4대 폭력 예방 교육 미이수자들에 대한 교육 이수 방안을 마련·시행하기 바람</p>

감사결과 처분서

됨에 따라 연구지원비 0,000천원을 환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기관명 : 한경국립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	<p>연구년 교원 연구 결과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p> <p>○ 「한경대학교 연구년 규정」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에 따르면 연구년은 전임교원이 강의와 학생지도 등을 담당하지 아니하고, 본교를 포함한 국내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학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본교 교원 총수의 10퍼센트 이내로 하고 소속 전공 주임교수와 학부장 및 총괄학부장의 추천을 받아 연구지원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하고, 연구년이 선정된 교원은 연구년 종료 후 등재(후보)학술지는 1년, 국제저명학술지는 2년 이내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야 하고, 발표 즉시 실적물 2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구년 교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구지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하여야 함에도,</p> <p>- 한경대학교 ○○○전공 ㄱㄱㄱ은 2000년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기한(2000. 0. 00.)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00.0.00.에 제출하여 000일 지연하는 등 2000년부터 2000년까지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된 위 ㄱㄱㄱ 등 교원 0명은 연구년 종료 후 연구 결과보고서 총 4건에 대해 제출기한을 도파하여 2000. 0. 감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연구년 교원은 「한경대학교 연구년 규정」에 정한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한경대학교 연구지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하여야 하나 2000. 0. 감사일 현재까지 제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 또한 한경대학교 △△△전공 ㄴㄴㄴ은 2020년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된 후 연구년 기간 중에 해임(2000.00.00.)</p>	<p>○ 신분상 처분</p> <p>- <경고> 2명</p> <p>- <주의> 2명</p> <p>○ 행정상처분</p> <p>- <부서주의></p> <p>- <통보></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국립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	<p>공무 국외여행 귀국 보고서 지연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3조의6에 따르면 공무 국외 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 등은 30일 이내에 공무 국외 출장 등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경대학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8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을 마친 교직원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한국복지대학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7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을 마친 교직원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 한경대학교 □□□□학부 ○○○는 2000. 0.00.부터 2000. 0.00.까지 공무 국외 여행을 다녀오면서 2000.00.00.에 00일이 지연되어 보고서를 등록하는 등 2000년부터 2000년까지 위 ○○○ 등 교원 0명이 보고서를 지연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 한국복지대학교 ▽▽▽▽과 □□□는 2000. 0. 0.부터 2000. 0.00.까지 공무 국외 여행 다녀오면서 2000.0.00.에 00일이 지연되어 보고서를 지연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상처분 - <부서주의> - <통보>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국립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5	<p>미승인 공무 국외여행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3조의2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 시 소속기관의 장이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13조의3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한경대학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3조에 따르면 교직원이 공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 요청하여야 하는데도, - 한경대학교 ○○○○학부 ◇◇◇은 2000년 0건의 공무 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총장의 승인 및 해당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상 처분 - <경고> 1명 ○ 행정상처분 - <통보>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국립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6	<p>미신고 공무 외 국외여행 실시</p> <p>○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한경대학교 교원 공무 외 국외여행 규정」 및 「한경국립대학교 교원 공무 외 국외여행 규정」 제7조에 따르면 교직원이 공무 외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본부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p> <p>- 한경대학교 □□□□□학부 ○○○전공 △△△는 2000.00.00. 2000.0.0.까지 공무 외 국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등 2000년부터 2000년까지 위 △△△ 등 0명, 총0건에 대하여 신고 하지 아니하고 실시한 사실이 있음.</p>	<p>○ 행정상처분 - <통보></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국립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7	<p>복무 미처리 외부강의 실시</p> <p>○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에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한경대학교 ◇◇◇◇◇학부 ○○○ 00.00. 근무상황부에 복무처리를 하지 않은 채, 한국연구재단에서 주최한 온라인 평가에서 “2000년 기본연구 신규선정 온라인 평가”를 하는 등 2000. 0.부터 2000. 0.까지 위 ○○○ 등 교원 00명이 복무처리를 하지 않은 채 외부강의를 한 사실이 있음.</p>	<p>○ 행정상처분 - <통보></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국립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8	<p>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부적정</p> <p>○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및 제7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 훈령)제4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의 범죄사건 중 ‘혐의 없음’ 결정은 내부종결처리 하되 「국가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1]부터 [별표6]*까지 적용하여야 하며, ‘공소권없음’ 결정 등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1]부터 [별표6]*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별표1] (성실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비위 유형에 대해 비위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이하 같음) 기준, [별표2] 초과근무 및 여비 부당수령 기준, [별표3] 청렴의 의무 위반 기준, [별표4] 성 관련 비위 기준, [별표5] 음주운전 사건 처리 기준, [별표6] 징계부가금 부과 처리 기준</p> <p>- 한국복지대학교는 2000. 0. 0. ◇◇◇◇ 0명이 경기평택 경찰서로부터 사기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과 통보를 받았다는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대한 별도 검토 없이 내부종결하는 등 교직원 0명의 범죄사실 통보 또는 피의사실 처분결과 통지에도 「국가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대해 별도 검토 없이 임의로 내부종결 처리한 사실이 있음.</p>	<p>○ 행정상처분</p> <p>- <부서경고></p> <p>- <통보></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국립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9	<p>채용예정자 비위면직 미조회 및 의원면직 제한대상 미확인</p> <p>① [채용예정자 비위면직 여부 미조회·미확인]</p> <p>○ 「비위면직(파면·해임)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각급 기관이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미리 채용예정 공무원의 비위면직자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고, 공개경쟁채용은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조회·확인, 그 외 방법으로 채용 시에는 임용 전에 조회·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제6조 단서 조항에 따라 채용 예정 공무원의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으로 재직할 경력에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회·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p> <p>- 한경대학교는 2000. 0. 00. ◇◇◇◇ 트트트을 채용하면서 비위면직 여부를 조회·확인하지 않고 채용하는 등 2000. 0. 0.부터 2000. 0. 00.까지 위 트트트 등 0명에 대해 비위면직 여부를 조회·확인하지 않고 공무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있음.</p> <p>② [의원면직 제한대상 여부 미확인]</p> <p>○ 「공무원 비위사건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요구중인 경우,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p>	<p>○ 신분상 처분</p> <p>- <주의> 3명 ①</p> <p>- <주의> 2명 ②</p> <p>- <주의> 2명 ①+②</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국립대학교

<p>이라 함)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담당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한국복지대학교는 2000. 0. 00. 의원면직을 신청한 ㅎㅎㅎ 에 대하여 의원면직 제한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2000. 0. 0. 면직처리하는 등 2000. 0. 00.부터 2000. 0. 00.까지 위 ㅎㅎㅎ 등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육공무원 0 명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면직 처리한 사실이 있음.</p>	
--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0	<p>징계 처리 절차 미준수</p> <p>○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4항 등에 따르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계사유를 통보(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등)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는데도,</p> <p>- 한국복지대학교는 2000. 00. 00. 수원지방검찰평택지청장 으로부터 ◇◇◇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처분 등 공무원 피의사실 처분결과 통 지를 받았음에도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하지 않 고 000일 지연하여 2000. 0. 00.에 징계의결 요구한 사실이 있음.</p>	<p>○ 신분상 처분 - <주의> 2명</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국립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1	<p>민원 처리 기한 미준수</p> <p>○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으며,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부 민원 사무 처리규정」 제6조에 따르면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민원을 배부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민원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민원이 처리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고,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간 이내(고충민원: 7일)에 민원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p> <p>- 한경대학교는 2000. 0. 00. 접수 및 담당자 지정 민원에 대해 처리기간의 연장 없이 처리기한을 000일 지연하여 2000. 0. 00.에 답변하는 등 민원 0건에 대해 민원 처리 기한을 미준수한 사실이 있음.</p>	<p>○ 신분상 처분 - <경고> 2명</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2	<p>BTL 생활관 수선충당금 관리 부적정</p> <p>○ 「한경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서」(2014.7.3.)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BTL사업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을 반영하여 각 사업년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사업년도가 개시되는 30일 전까지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계획서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관련 법령의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주무관청과 시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이 변경 될 수 있고, 같은 규정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사업시설을 유지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운영비 중 유지보수비를 충당금 적립일정에 따라 적립하고 그 중 일부는 일부수선항목 및 비율을 정하여 별도로 관리하며, 적립된 충당비의 소유권은 주무관청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한경대학교는 2000.0.0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BTL 생활관 수선충당금으로 '○○○○○○○○'가 관리하는 계좌(000-000000-00000, 하나은행 MMDA)로 00,000,000원을 적립하였으나,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예금</p>	<p>○ 행정상처분 - <기관주의> - <통보></p>

	<p>(MMDA)의 저금리 특성상 2000.0.부터 2000.0.까지 00,000원의 이자만이 지급되었으며, 2000.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는 지급된 이자가 0원에 불과한데도 BTL 운용사와 협의 등을 통한 BTL 생활관 수선충당금의 정기 예금 등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익 증대 노력 없이 저금리 상품을 유지한 사실이 있음</p>	
--	---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3	<p>채용형 계약학과 신입생 지원자격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교육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소기업계약학과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제 15조제6항에 따르면 채용형 계약학과의 참여학생은 채용약정의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기업에서 과거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국립한경대학교 ▽▽▽▽은 2000학년도 0학기에 △△학과로 '○○○○'를 설치·운영하면서 입학생 ○○○가 '□□□'의 대표이사로 2000.0.00.부터 0000.0.00.까지 재직한 사실이 있어 채용형 계약학과 입학대상이 아닌데도 입학을 허가('2000학년도 0학기 계약학과 입학서류 검토 결과 보고', ▽▽▽▽-0000, 2000.0.00.)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상 처분 - <주의> 1명 ○ 행정상처분 - <통보>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4	<p>휴강 등에 따른 결강 보강계획 사전허가 관리 부적정</p> <p>○ 「고등교육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따르면 수업일수와 교원의 교수시간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한경대학교 학칙」 제29조 및 「한경국립대학교 학칙」 제31조에 따르면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하고, 구 「한경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80조 및 「한경국립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79조에 따르면 강의담당 교원이 학사일정에 없는 휴강이나 출장, 휴가 등에 따른 결강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강계획서를 소속 학부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강의담당 교원은 휴강·결강 및 보강계획을 수강 학생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2022학년도 강의료 지급 기준 및 관련자료 제출 안내”(교무과-2841, 2022.3.11.)에 따르면 보강계획을 학사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보강계획의 사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같음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은 2000. 0. 0. “○○○○” 과목의 수업 결강을 위한 보강계획을 결강일(2000. 0. 0.) 보다 00일 지난 2000. 0. 00.에야 학사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보강계획의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등 교수 ◇◇◇ 등 000명은 2000학년도 0학기부터 2000학년도 0학기까지 총 000회에 걸쳐 휴강이나 출장, 휴가 등에 따른 수업 결강을 위한 보강계획을 제출하면서 짧게는 0일에서 길게는 000일까지 학사시스템에 지연 입력함으로써 보강계획의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p>	<p>○ 행정상처분</p> <p>- <기관주의></p> <p>- <통보></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국립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5	<p>계약업무 처리 소홀</p> <p>○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p> <p style="margin-left: 20px;">* 「인지세법」 제3조 관련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과세문서) 및 세액</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0%;">과세문서</th> <th style="width: 70%;">세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td> <td>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td> </tr> <tr> <td>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td> </tr> <tr> <td rowspan="2"></td> <td>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td> </tr> <tr> <td>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 이하인 경우 : 15만원</td> </tr> <tr> <td></td> <td>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td> </tr> </tbody> </table> <p>○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급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설계 변경 등으로 증액 또는 장기계속공사로서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이 되는 경우는 그 계약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p> <p style="margin-left: 20px;">*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이며,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일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함</p> <p>○ 「국가계약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p>	과세문서	세액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p>○ 행정상처분</p> <p>- <부서주의></p> <p>- <통보></p>
과세문서	세액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고시기간 2020.05.01.~2023.12.31.)」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국가계약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완료한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고시기간 2020.05.01.~2023.12.31.)」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일 2022.05.19.)」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및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소유한 회사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 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환경대학교 및 환경국립대학교 교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시행일 2022.05.19.)」 제9조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

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국민권익위)」Ⅲ-3.(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르면 수의계약의 범위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입찰 등 경쟁에 따른 계약이 아닌 방법으로 계약 대상을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다수의 견적 제출자 중 최저 가격 제출자로 계약 상대방을 선정하는 방식과 같이 경쟁입찰 방식을 일부 원용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제한되는 수의 계약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 데도,

【인지세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미확인 관련】——①

- 환경대학교 △△△은 2000.00.00. ‘○○○○’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 000,000원에 해당하는 인지세 0 0,000원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환경대학교 ◇◇◇는 2000.00.00. ‘○○○○’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 000,000원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000,00 0원 매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환경대학교 및 환경국립대학교 ◇◇◇ 등 5개 부서는 **【붙임1】** “인지세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미확인 현황”과 같이 환경대학교 및 환경국립대학교 ◇◇◇ 등 2000년부터 20030 까지 인지세 총 000,000원(00건)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총 000,000원(0건) 매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납품(준공)완료 후 검사기간 지연 관련】 ———

②

- 환경대학교 ○○○은 ‘▽▽▽▽▽’ 준공 완료 사실을 2000.00.00.에 통지 받은 날부터 00일이 지난 2000.00. 00.에 검사를 완료하는 등 한국복지대학교, 환경대학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국립대학교

<p>교, 한경국립대학교 ○○○ 등 0개 부서는 2000년 0월부터 2000년까지 총 00건의 납품(준공) 완료 통지 후 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p> <p>【대금청구 후 대가지급 지연 관련】 _____</p> <p>③</p> <p>- 한경대학교 □□□□□는 ‘△△△△’완료 후 계약업체로부터 2000.00.00.에 대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8일이 지난 2000.00.00.에 대가를 지급하는 등 한경대학교 □□□□□ 등 3개 부서는 2000년 0월부터 2000년까지 총 00건의 대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p> <p>【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미확인 관련】 _____ ④</p> <p>- 한경대학교 ◇◇◇◇은 2000.00.00. ‘○○○○○’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서’를 제출 받지 않는 등 한경대학교 및 한경국립대학교 ◇◇◇◇ 등 0개 부서는 2000. 0. 00.부터 2000년까지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총 00건의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p>	
---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6	<p>교육훈련 장기(1개월 이상)파견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p> <p>○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에 따르면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장기(1개월 이상)파견 공무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한국복지대학교 ◇◇◇◇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승진자 교육과정 교육훈련(2000.00. 0.~00 0.) 장기(1개월 이상)파견 공무원인 □□□에게 2000. 00월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훈련 장기(1개월 이상)파견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지급 현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5px 0;"> <thead> <tr> <th style="width: 15%;">소속</th> <th style="width: 10%;">직급</th> <th style="width: 10%;">성명</th> <th style="width: 15%;">교육기관</th> <th style="width: 15%;">교육이수기간</th> <th style="width: 15%;">부적정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한국복지대학교 (총무처)</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소속	직급	성명	교육기관	교육이수기간	부적정지급액	한국복지대학교 (총무처)						<p>○ 행정상처분</p> <p>- <시정(회수)></p>
소속	직급	성명	교육기관	교육이수기간	부적정지급액									
한국복지대학교 (총무처)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국립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7	<p>세출예산 성질별 과목 집행 부적정</p> <p>○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대학회계의 세출예산은 사업별·성질별로 구분하고, 사업별 구분은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성질별 구분은 목·세목으로 각각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국립대학회계 예산 집행 기본지침(2020~2022)」의 세출예산 성질별 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르면, 심사수당은 운영수당(210-06)에서 집행하도록 되어있고, 협의회비, 재정보험은 공공요금 및 제세(210-02)에서 집행하도록 되어있으며, 도서 등의 자료구입은 일반수용비(210-01)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한경국립대학교는 2000.0.00.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집행해야할 재정보증보험 000,000원을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는 등 2020.3.16.부터 2023.5.16.까지 위 재정보증보험의 일반수용비 집행 등 총 00건 00,000천원을 세출예산 성질별 목과 달리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행정상처분</p> <p>- <부서경고></p> <p>- <통보></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국립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8	<p>셔틀전세버스 운전자 교통안전정보 및 성범죄 경력 미확인</p> <p>○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르면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이용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차량 및 운전자에 관하여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여부, 차령 및 운행거리 기준 준수여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여부 등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전세버스 입찰 등 이용계약시 교통안전정보 등 적극협조」(국토교통부 대충교통과-5271(2017.09.18.))에 따르면 운수회사는 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 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교통안전정보 통보서를 조회·발급받아 이용자(학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운수회사가 제출한 교통안전정보 통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확인한 후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020 ~ 2023학년도 무료셔틀버스 임차용역 특수조건」 제8조에 따르면 을은 운행차량 번호, 운전자 인적사항, 긴급연락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운행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p>	<p>○ 신분상 처분</p> <p>- <주의> 11명</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국립대학교

<p>정기간(최장 10년) 동안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조회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운전자) 버스운전자격 취득여부, 운전자 교육 이수사항, 입사등록사항 운전정밀적성검사 수검여부, 운전면허 정지·취소 현황 등</p> <p>(자동차) 소유자명, 최초 등록일, 보험(책임·종합) 가입 및 자동차 검사 등</p> <p>- 한경대학교 □□□는 2000. 0. 00. ‘○○○○○’ 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송업체로부터 버스운전자격 취득여부 등 교통안전정보통보서를 제출받지 않고, 운전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확인하지 않는 등 한경대학교 및 한경국립대학교 □□□는 2000. 0. 00.부터 2000. 0. 00.까지 위 무료셔틀버스 임차용역 계약 등 총 0 의 무료 셔틀버스 임차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송업체로부터 버스운전자격 취득여부 등 교통안전정보통보서를 제출받지 않고, 운전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9	<p>예산 전용 부적정</p> <p>○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은 동일한 정책사업 내에서는 경비를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인건비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는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국립대학회계 예산 집행 기본지침(2022)」의 특정업무경비(240-03) 세부지침에 따르면, 인력증원 등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0년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국립대학회계 예산 집행 기본지침(2021)」에 따르면 수입대체경비 사업을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한경국립대학교는 2000.00.0.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의 인건비 000,000원을 직무수행경비로 전용하는 등 2000.0.00.부터 2000.0.00.까지 총 00건 000,000원을 전용한 사실이 있음.</p>	<p>○ 행정상처분</p> <p>- <부서경고></p> <p>- <통보></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국립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0	<p>유휴자금 정기에금 미예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국립대학 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에 따르면 예금이자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데도, ○ 한경대학교는 2000년 0월부터 00월까지 대학회계에 속하는 운용가능 유휴자금(평균잔액) 000,000천원을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기에금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통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등 2000년 0월부터 2000년 0월 감사일 현재까지 대학회계에 속하는 운용가능 유휴자금(평균잔액)을 정기에금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보통예금 계좌에 예치한 사실이 있음 	<p>○ 행정상처분 - <통보></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국립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1	<p>일상감사 미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은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경대학교 일상감사 지침」 및 「한국복지대학교 일상감사 지침」에 따르면 추정가격 1건당 총액 1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제조·처분 또는 용역 계약(재산 취득·처분 포함)은 일상감사 대상업무로 되어 있는 데도, - 한경대학교 ○○○○은 2000. 0. 00. 추정가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교내 □□□□ 구매(계약금액 : 37,868천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한경대학교 ○○○○ 및 한국복지대학교 ◇◇◇◇는 2000. 0. 00.부터 2000 0. 00.까지 2000. 0. 00. 추정가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위 □□□□ 구매 계약 등 총 0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p>○ 행정상처분 - <부서경고></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국립대학교

	<p>년도 0학기부터 2000학년도 0학기까지 위 △△△ 등 총 0명의 학생이 미복학 등의 사유로 제적되었음에도 기납부한 등록금 합계 000,000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2	<p>제적 학생 등록금 미반환</p> <p>○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법령에 따라 입학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별표*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고, 「한경대학교 학칙」 제42조 및 「한경국립대학교 학칙」 제45조에 따르면 학생은 학기마다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관련 별표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른 반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30%;">반환사유 발생일</th> <th style="width: 40%;">반환금액</th> <th style="width: 3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입학일 또는 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td> <td>등록금 전액</td> <td>①</td> </tr> <tr> <td>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td> <td>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td> <td>②</td> </tr> <tr> <td>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td> <td>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td> <td>③</td> </tr> <tr> <td>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td> <td>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td> <td></td> </tr> <tr> <td>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지난 날</td> <td>반환하지 않음</td> <td></td> </tr> </tbody> </table> <p>- 한경대학교 및 한경국립대학교 ◇◇◇는 ○○○○○ 학부 △△△ 학생(학번 2000000000)이 2000. 0. 0. 휴학 후 복학하지 않아 2000. 0. 00. 제적 되었음에도 기납부한 등록금 000,000원을 반환하지 않는 등2000학</p>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고	입학일 또는 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①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③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p>○ 행정상처분</p> <p>- <통보></p> <p>- <시정(회수)></p>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고																		
입학일 또는 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①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③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국립대학교

	한 사실이 있음	
--	----------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3	<p>연구 물품 직접구매 등 집행 부적정</p> <p>○ 「한경대학교 연구개발비 관리 지침」 제45조 및 제46조, 제47조에 따르면 연구과제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비품, 소모품, 용역 등의 구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물품(기자재) 구매요청서, 물품구매규격서, 가격조사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인 산학협력단에 구매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한경대학교 연구개발비 관리 지침」 중앙구매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5%;"></th> <th style="width: 20%;">항목</th> <th style="width: 40%;">기준금액</th> <th style="width: 35%;">관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연구기자재 및 비품 구매 계약</td> <td>1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td> <td>제45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소모품 등의 구매 계약</td> <td>5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td> <td>제46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용역 및 기타 계약</td> <td>5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td> <td>제47조</td> </tr> </tbody> </table> <p>【중앙구매 대상 연구 물품 직접구매 관련】 ----- ①</p> <p>-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는 “△△△△△”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구매일: 2000. 0. 00. 구매비용: 000,000원)을 직접 구매(연구비카드 집행)하는 등 2000년부터 2000년까지 교직원 00명은 각 수행 중인 연구과제에서 중앙구매 대상 연구 물품 총 00건, 합계 000,000원을 직접 구매한 사실이 있음</p> <p>【연구 물품 분할구매 관련】 ----- ②</p> <p>- 특히,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은 2000. 00. 0. “▽▽▽▽▽(연구기간: 2000. 0. 0.-2000. 0. 0., 연구비: 금 00,000,000원)”에서 위와 같이 중앙구매를 하지 아니한 ‘△△△△△’을 같은 날 분할결재(결재 1: 4,532,000원, 결재 2: 00,000원, 구매처: △△△)하는 등 2000년부터 2000년까지 교수 0명은 각 수행 중인 연구과제에서 동일 날짜에 2~3차례 분할결재 하는 방식으로 위 중앙구매를 하지 아니한 연구물품 총 0건, 합계 0000,000원을 구매</p>		항목	기준금액	관련	1	연구기자재 및 비품 구매 계약	1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제45조	2	소모품 등의 구매 계약	5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제46조	3	용역 및 기타 계약	5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제47조	<p>< ① 관련 ></p> <p>○ 신분상 처분</p> <p>- <주의> 5명</p> <p>< ② 관련 ></p> <p>○ 신분상 처분</p> <p>- <경고> 5명</p>
	항목	기준금액	관련															
1	연구기자재 및 비품 구매 계약	1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제45조															
2	소모품 등의 구매 계약	5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제46조															
3	용역 및 기타 계약	5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제47조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4	<p>연구개발능률성과급 평가 및 지급대상 설정 부적정</p> <p>○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연구 지원”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수행 및 성과 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5조 제2항 및 제15조 제2호, 제30조에 따르면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중 인력지원비에서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에 참여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한경대학교 ◇◇◇◇은 2000.00.00. 간접비 납부과제의 연구책임자만을 대상으로 연구기여도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의 ‘2000년 ○○○○ 지급 계획(안)’을 수립한 뒤, 2000.00.00.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징수한 간접비 재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0명의 연구기여도 평가 결과에 따라 ○○○○ 함께 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2000년부터 2000년까지 연구지원인력을 포함 없이 연구책임자만으로 기여도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징수한</p>	<p>○ 행정상처분</p> <p>- <개선></p>

<p>간접비 재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연인원 00명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함께 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 2022.7.7.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 지침을 전부 개정하면서도, 연구지원인력 포함 없이 간접비가 계상되어 본교 연구과제로 중앙관리되는 모든 외구연구과제의 연구자를 지원대상으로 규정(제2조)</p>	
--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국립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5	<p>연구비 구입 물품의 기부채납 미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경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15조 및 「한경대학교 연구개발비 관리 지침」 제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기자재와 비품은 취득과 동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부채납 시기를 연구종료 이후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은 “◇◇◇◇◇◇” 연구과제에서 2000. 0. 00. 취득한 “○○○○○○○○”을 어떠한 사유 없이 기부채납 하지 않는 등 교원 0명은 연구비로 취득한 물품 총 00점을 2000. 0. 00. 감사일 현재까지 기부채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상 처분 - <주의> 2명 ○ 행정상처분 - <통보>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국립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6	<p>용역과제 회의비 집행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4항에 따르면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를 계상할 수 없고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만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관리 매뉴얼」 “연구과제추진비 사용방법”에 따르면 외부기관 참석자 없이 단일기관 내부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 집행은 불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한경대학교 연구개발비 관리 지침」(적용: ~2023. 1. 15.) “회의비 부당집행 기준”에 따르면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지원기관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은 불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p>【외부참석자 없는 회의비 집행 관련】 ———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용역(정부·민간)과제 담당자 ◇◇◇의 「한경대학교 연구개발비 관리 지침」 미숙지로 인해 용역(정부·민간)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외부참석자 없이 회의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안내(2000년 0월부터)함에 따라,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는 “▽▽▽▽▽”를 수행하면서 2000. 00. 00. 외부참석자 없이 회의를 하였는데도 회의비 명목으로 식대 100,000원을 집행하는 등 연구책임자 00명은 2000. 0. 00.부터 2000. 0. 00.까지 00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외부참석자 없이 회의를 하고 총 00건, 합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관련 > ○ 행정상처분 - <부서경고> - <통보> < ② 관련 > ○ 행정상처분 - <개선>

<p>000,000원을 회의비 명목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 회의비 계상 및 집행 기준 관련】 — ②</p> <p>- 아울러,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원기관(정부 또는 민간)에서 외부 참석자가 없는 회의비는 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2000. 0. 00. 「한경대학교 연구개발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면서 “회의비 계상 및 집행 기준”에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 집행 시에는 반드시 외부참석자를 포함하여야 하되, 정부·민간 용역 과제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사실이 있음</p> <p>* 외부 참석자 없는 회의비 집행 불인정에 대한 지침이 있는 용역 발주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연구개발비관리지침(2019. 8. 30.)), 국립수산물안전연구소(연구용역비 산정 및 정산 기준(2023. 1.)),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p>	
--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국립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7	<p>일반경쟁 대상 용역 분할 수의계약 체결</p> <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은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재공고입찰에도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는데도,</p> <p>- 한경대학교 △△△는 2020년 “□□□□□□□□” 연구과제 내 B-2파트의 ‘○○○○○’부분에 대한 연구 장비 및 재료 구매, 시제품 제작 등 파트 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2000.00. 부터 2000.0.까지 위 과제 등 0개 연구과제에서 사실상 하나의 계약에 속하는 일반경쟁 대상 용역 0건, 합계 000,000원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한 사실이 있음</p> <p>※ 연구책임자 ◇◇◇은 동 연구과제의 기술적 진행 및 성과 관리 부분은 자신이 총괄 검토하였으나, 물품 및 업체 선정, 구매 절차 등은 파트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진술함</p>	<p>○ 신분상 처분</p> <p>- <경고> 1명</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국립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8	<p>자체학술 활동 연구실적물 관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경대학교 학술활동경비 지원 시행세칙」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연구실적물 중 ‘국제저명학술지’는 연구종료 후 2년 6개월 이내에 등재하여야 하며, 제14조제1항 및 제3항제1호에 따르면 연구실적물 제출 기한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연구지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의’ 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한경국립대학교 ◇◇◇는 교수 □□□이 2000학년도 자체학술 활동연구를 수행하고 제출 기한(2000. 0. 00.)을 00일 초과하여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였는데도 해당 연구책임자에 대해 ‘주의’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해당 교수는 2022. 10. 19. “코로나로 인한 피검자 모집 및 실험이 지연되어 교무과에 공문을 제출하였으나, 교무과에서는 이에 대한 승인이나 ”주의“ 등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상처분 - <부서경고> - <통보>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9	<p>직무발명 미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국·공립 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전담조직(산학협력단)이 승계할 수 있고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하며,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한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5조 및 제7조, 제9조에 따르면 발명자가 직무발명을 한 경우 산학협력단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고,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무발명의 승계 여부를 결정하며,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 발명자의 자유발명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은 2000. 00. 00. ‘□□□ □□□’ 직무발명에 대하여 ◇◇◇◇◇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하는 등 2000. 0. 0.부터 2000. 0. 00.까지 교수 0명은 총 0건(단독 0건, 공동 0건)의 직무발명을 하고도 ◇◇◇◇◇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상 처분 - <주의> 4명 ○ 행정상처분 - <통보>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국립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0	<p>국유재산 사용허가 위반</p> <p>○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시 사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0조2항에 따르면 사용료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p> <p>- 한경국립대학교 ○○○○ ◇◇◇◇는 2000.0.0. 기관 내 인사발령을 받았는데도 후임자인 △△△에게 본인인 기안한 문서와 관련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고지가 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른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주)□□□가 2000. 0. 00. ~ 2000. 0. 00.)동안 사용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p>	<p>○ 신분상 처분 - <주의> 1명</p> <p>○ 행정상처분 - <통보></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국립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1	<p>전문공사 계약체결 등 부적정</p> <p>○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비목별 지침 건설비(420목)적용범위에 따라 공사비(420-03목)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공사 예정금액 15,000천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기공사법」 제3조 1항 및 제4조 1항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공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의5 제2항 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모든 건설공사의 도급금액명세서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공사 착공서는 착공전 사진을, 준공시는 진행 중과 완료 후 사진을 2부씩 제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p> <p>【전문건설업 면허 미등록 업체 용역 계약】 …… ①</p> <p>- 한경국립대학교는 2023. 1. 실내건축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와 공사의 형태로 계약 해야 할 ‘○○○○○ ○’ (계약금액 000,000천원)을 해당 자격 면허(실내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가 없는 □□□□(대표자 △△△)와 용역의 형태로 계약하면서, 법정 보험료도 미계상하였고, 공사 관련 사진(착공 전·후, 준공 완료)도 제출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p> <p>【전문건설업 면허 미등록 업체 공사 계약】 …… ②</p> <p>- 한경국립대학교에서는 ‘▽▽▽▽▽’를 추진하면서 2000.</p>	<p>【①, ②번 관련】</p> <p>○ 신분상 처분 - <경고> 1명 - <주의> 1명</p> <p>【①번 관련】</p> <p>○ 별도조치 - <고발></p> <p>【②번 관련】</p> <p>○ 별도조치 - <고발></p>

	0. 00. 건설업 면허 미등록업체인 '◇◇◇◇'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등 위 '◇◇◇◇' 등 건설업 면허 미등록 업체 0곳과 전문공사 계약 체결한 사실이 있음.	
--	--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환경국립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2	<p>시설공사 하자검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1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 제2항에 의거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고 계약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한 하자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하자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별도로 최종검사(만료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조서 작성 및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환경국립대학교는 2000. 00. 00. 준공한 '□□□□'의 하자 담보책임기간 내 하자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2000. 00.부터 2000. 0.까지 준공 한 위 '□□□□'외 00건의 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 최종검사를 미 실시 하고,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미발급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상처분 - <부서경고> - <통보>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국립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3	<p>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2항, 3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 제8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 한경국립대학교는 2000. 0. 00. 주식회사 ○○○○와 계약한 '□□□□□'의 0건을 준공 처리 하면서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해당 업체가 제출한 사용 증빙서류가 부실함에도 000천원을 정산하여 감액하지 않고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상 처분 - <주의> 1명 ○ 행정상처분 - <시정(회수)>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4	<p>시설공사비 정산 처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한경국립대학교 ◇◇◇◇◇에서는 2000. 00. 00.'△△△△△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인 '□□□□'가 당초 계약내역서 상 반영되지 않은 인테리어필름, 아트보드, 라인타공흡음보드, 수성페인트, 스카시간판, 크로마키스크린 등의 공사대금 000천원*을 증액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면, 몰량 산출 내역서 등의 계약 내용 변경 사항을 사전 통지하지 않았음에도 임의 증액된 공사금액을 그대로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상 처분 - <주의> 2명 ○ 행정상처분 - <시정(회수)>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5	<p>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미계상</p> <p>○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법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총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2020.6.30. 이전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이하 “퇴직공제부금비”라 한다.)을 계상하여야 함에도,</p> <p>- 한경국립대학교 ○○○에서는 2020. 00. 00. ‘△△△△’와 계약한 ‘□□□□□□’의 발주금액이 000,000천원으로 총공사금액이 0천만원임에도 도급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누락하는 등 위 공사 외 0건의 도급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000천원 계상을 누락하였고,</p> <p>한경국립대학교 ▽▽▽에서는 2000. 0. 00. ‘◇◇◇◇’와 계약한 ‘△△△△△’의 발주금액이 000,000천원으로 공사예정금액이 000,000원 이상임에도 도급금액에 퇴직공제부금비 000천원 계상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p>	<p>○ 신분상 처분 - <주의> 3명</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6	<p>내진보강공사 추진에 따른 내진보강 감리용역 미실시</p> <p>○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1.7.2.에 따르면 내진설계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내진 성능 향상을 위한 공사 단계에서의 구조 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 유지·관리·리모델링 단계에서의 구조안전확인, 구조감리 및 안전진단 등은 해당 업무별 책임구조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함에도,</p> <p>- 한경국립대학교 ○○○에서는 2000.00. 0. ‘○○○’와 계약한 ‘◇◇◇◇◇◇’를 추진하면서 내진보강 구조감리용역 등 책임구조기술자의 확인 및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위 공사 외 0건의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면서 내진보강 감리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 신분상 처분 - <주의> 2명</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국립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7	<p>기계설비 안전점검 부적정</p> <p>○ 「기계설비법」 제16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부터 제11조에 따르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 대상현황표, 유지관리 점검표, 성능점검표를 포함한 연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점검 및 점검기록서류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p> <p>* 「기계설비법 시행령」(별표1)의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오수정화·물재이용설비, 우수배수설비, 보온설비, 덕트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설비, 플랜트설비, 특수설비</p> <p>※ 「기계설비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제31427호) 부칙 제4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13호) 부칙 제3조(기존 건축물 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 특례)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 15,000㎡ 이상 30,000㎡ 미만은 “2022. 4. 17.부터 시행” 하고 10,000㎡ 이상 15,000㎡ 미만은 “2023. 4. 17. 시행”</p> <p>- 한경국립대학교 평택캠퍼스는 ○○○의 연면적이 00,000㎡로서 책임 및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2000. 0. 00.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을 2000. 0. 00. □□□ 계약자와 기계설</p>	<p>○ 행정상처분 - <부서주의> - <통보></p>

	<p>비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만 실시하고 2000. 0. 0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2000년 및 2000년 연간점검계획서 작성과 반기별 1회 이상 유지관리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안성캠퍼스는 △△△의 연면적이 00,000㎡로서 책임 및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2000. 0. 00.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에 대해 연간점검계획서만 작성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반기별 1회이상 유지관리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	---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경국립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8	<p>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이행 불철저</p> <p>○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4조부터 제10조에 따르면 소방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 또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국가는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방사업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및 검토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한경국립대학교는 2000. 0. 00. ○○○○와 계약된 “□□□□□□” 을 추진하면서 발주자는 도급금액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위한 비용을 계상하지 않았고, 소방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가입기간, 피보험자 등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의무가 있음에도 총 00건의 소방시설공사·감리용역·시설관리용역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 행정상처분</p> <p>- <부서주의></p> <p>- <통보></p>